

약 식 명 령

사 건

업무상배임

피 고 인

주 형 과

피고인을 벌금 500,000(오십만)원에 처한다.

부 수 처 분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,000(일십만)원을 1
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